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2. 10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2월 2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2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꺾 소 득)

가. 제안이유

1992. 12. 26(대통령령 제13786호)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하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

대 상	현 행	개 정
보건 소장의 직급 명칭	지방 의무기정 지방 보건기정 또는 지방 보건기좌	지방 의무서기관 지방 보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

3.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직급명칭의 획일화를 기함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의 인식에도 편리하므로 본 조례 개정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습

5. 토론요지 : 없 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